

신구조문 대비표

2022.3.1.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개정 전				개정 후			
학칙 제4조(모집단위 및 신입생기준 입학정원) ① (생략) ② 전문학사과정에 두는 전공(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의한 정원 외 학생 수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2항의 규정에 따른다.				학칙 제4조(모집단위 및 신입생기준 입학정원) ① (현행과같음) ② 전문학사과정에 두는 전공(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의한 정원 외 학생 수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2항의 규정에 따른다.			
스쿨(과)	모집단위	입학정원	학제	스쿨(과)	모집단위	입학정원	학제
융합콘텐츠	융합콘텐츠창작전공	40	3년제	융합콘텐츠	융합콘텐츠창작전공	50	3년제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전공	230	3년제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전공	230	3년제
만화콘텐츠	웹툰만화콘텐츠전공	180	3년제	만화콘텐츠	웹툰만화콘텐츠전공	180	3년제
	웹소설창작전공	76	3년제		웹소설창작전공	76	3년제
게임콘텐츠	게임전공	240	3년제	게임콘텐츠	게임전공	240	3년제
푸드(학부)	조리전공	-	3년제	푸드	푸드스쿨전공	-	3년제
	카페베이커리전공	-	3년제		푸드전공	120	3년제
	식품영양전공	-	3년제	패션뷰티스타일	패션메이커스전공	-	3년제
	푸드콘텐츠전공	-	3년제		스타일리스트전공	60	3년제
	팜푸드비즈니스전공	-	3년제		연출극작전공	5	3년제
	푸드스쿨전공	-	3년제		뮤지컬연기전공	40	3년제
	푸드전공	120	3년제		연극영상연기전공	45	3년제
패션	패션메이커스스타일리스트전공	-	3년제	무대미술전공	50	3년제	
	패션메이커스전공	30	3년제	모바일IT	모바일통신전공	40	2년제
	스타일리스트전공	40	3년제		스마트미디어전공	-	3년제
공연예술	연출극작전공	5	3년제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	-	3년제
	뮤지컬전공	-	3년제	합계		1,136	
	뮤지컬연기전공	40	3년제	③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연극영상전공	-	3년제	스쿨	설치학과	입학정원	학제
	연극영상연기전공	45	3년제	애니메이션	만화애니게임학과	167	1년제
	무대미술전공	50	3년제	만화콘텐츠			
모바일IT	40	2년제	게임콘텐츠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	-	3년제	공연예술	공연예술학과	40	1년제
	합계	1,136		패션	패션콘텐츠학과	20	1년제
③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④ 스쿨(과)내 전공(학과) 및 세부전공을 둘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스쿨	설치학과	입학정원	학제	⑤ (현행과같음)			
애니메이션	만화애니게임학과	167	1년제	학칙 제14조(입학전형)			
만화콘텐츠				① (현행과같음)			
게임콘텐츠				②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 중 총장이			
공연예술	공연예술학과	40	1년제	① (현행과같음)			
패션	패션메이커스비즈니스학과	20	1년제	②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 중 총장이			
합계		227		③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④ 스쿨(과)내 전공(학과) 및 세부코스를 둘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스쿨(과)내 전공(학과) 및 세부전공을 둘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생략)				⑤ (현행과같음)			
학칙 제14조(입학전형)				학칙 제14조(입학전형)			
① (생략)				① (현행과같음)			
②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 중 총장이				②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 중 총장이			

<p>정하는 선발방법을 병합한 전형에 의해 선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성적자료 2. 대학별고사 3. 면접고사 4. 실기고사 5. 기타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p>정하는 선발방법을 병합한 전형에 의해 선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성적자료 2. 대학별고사 3. 면접고사 4. 실기고사 5. 기타 학사학위대학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p>학칙 제15조(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p> <p>①,② (생략)</p> <p>③ 전공심화과정의 입학전형관리는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한다.</p>	<p>학칙 제15조(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p> <p>①,② (생략)</p> <p>③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입학전형관리는 학사학위대학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한다.</p>
<p>학칙 제22조(휴학)</p> <p>① 질병,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기당 수업일수 1/4(3주)를 초과하여 수업할 수 없을 때는 보증인 연서로-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p> <p>②,③,④ (생략)</p> <p>⑤ 수업연한 내 등록을 하고도 학점 미달로 졸업을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학기에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에 해당될 때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⑥,⑦ (생략)</p> <p>⑧ 의무복무 군휴학의 경우 휴학횟수 3회에 포함하지 않으나, 의무복무 종료 후 직업군인으로 복무를 연장하여 발생하는 휴학은 휴학횟수에 포함한다.</p>	<p>학칙 제22조(휴학)</p> <p>① 질병,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기당 수업일수 1/4(3주)를 초과하여 수업할 수 없을 때는 본인이 휴학을 신청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p> <p>②,③,④ (현행과같음)</p> <p>⑤ 수업연한 내 등록을 하고도 학점 미달로 졸업을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학기에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을 수강해야 할 경우 휴학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⑥,⑦ (현행과같음)</p> <p>⑧ 의무복무 군휴학의 경우 휴학횟수 3회에 포함하지 않으나, 의무복무 종료 후 직업군인으로 복무할 경우 일반휴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휴학횟수에 포함한다.</p>
<p>학칙 제23조(자퇴)</p> <p>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학칙 제23조(자퇴)</p> <p>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를 포함한 자퇴신청을 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학칙 제24조의2(전과)</p> <p>①,②,③,④,⑤ (생략)</p> <p>⑥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해당 학기 등록을 마쳐야 하며 전입학과와 등록금이 전출학과와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불한다.</p>	<p>학칙 제24조의2(전과)</p> <p>①,②,③,④,⑤ (현행과같음)</p> <p>⑥ 전과를 허가받은 자는 해당 학기 등록을 마쳐야 하며 전입학과와 등록금이 전출학과와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불한다.</p>
<p>학칙 제25조(교육과정)</p> <p>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 전공교과, 교직교과로 구분하고, 전공의 특성에 따라 전공교과에 실험실습을 과한다.</p> <p>②,③,④,⑤,⑥,⑦ (생략)</p> <p>⑧ 다양한 형태의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모집단위와 관계없이 융합형 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한 창의융합스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창의융합스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학칙 제25조(교육과정)</p> <p>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 전공교과, 교직교과로 구분하고, 전공의 특성에 따라 전공교과에 실험실습을 운영한다.</p> <p>②,③,④,⑤,⑥,⑦ (현행과같음)</p> <p>⑧ 다양한 형태의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모집단위와 관계없이 융합형 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한 융합전공제를 운영할 수 있다.</p>
<p>학칙 제26조의5(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운영)</p>	<p>학칙 제26조의5(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운영)</p>

<p>①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전공심화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p> <p>② 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이내로 한다.</p> <p>④ 전공심화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를 두며,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⑤ 전공심화과정의 교육과정 편성 및 관리를 위해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①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p> <p>②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이내로 한다.</p> <p>④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학사학위대학 운영위원회를 두며,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⑤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교육과정 편성 및 관리를 위해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학칙 제28조(교과이수단위)</p> <p>① (생략)</p> <p>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78학점(2년제 전공) 또는 117학점(3년제 전공)으로 하고, 이중 교양 이수학점은 2년제 8학점, 3년제 1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필수 교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p> <p>③ 학생은 매학기(학년도를 2학기로 운영하는 경우) 15학점 이상 수강함을 원칙으로 하되 22학점 이상을 초과하여 수강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강신청정정기간까지 수강학점조정신청서(별지 제5호)를 스쿨 행정실에 제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15학점 미만 또는 22학점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다.</p> <p>④,⑤ (생략)</p>	<p>학칙 제28조(교과이수단위)</p> <p>① (현행과같음)</p> <p>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78학점(2년제 전공) 또는 117학점(3년제 전공)으로 하고, 이중 교양 이수학점은 교양필수 4학점을 포함한 2년제 8학점, 3년제 1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필수 교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p> <p>③ 학생은 매학기(학년도를 2학기로 운영하는 경우) 15학점 이상 수강함을 원칙으로 하되 22학점 이상을 초과하여 수강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강신청정정기간까지 수강학점조정신청을 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15학점 미만 또는 22학점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다.</p> <p>④,⑤ (현행과같음)</p>
<p>학칙 제28조의4(학점 및 교과목이수 인정)</p> <p>① 고등교육법 제23조에 의해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인정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범위 안에서 이를 우리 대학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편입학 학생은 이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④ 고등교육법 제23조에 의하여 군복무 중 취득한 학점을 최대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의 범위에서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p> <p>⑤,⑥,⑦,⑧ (생략)</p>	<p>학칙 제28조의4(학점 및 교과목이수 인정)</p> <p>① 고등교육법 제23조에 의해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인정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범위 안에서 이를 우리 대학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②,③ (현행과같음)</p> <p>④ 고등교육법 제23조에 의하여 군복무 중 취득한 학점을 최대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의 범위에서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⑤,⑥,⑦,⑧ (현행과같음)</p>
<p>학칙 제27조의5(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교과이수단위)</p> <p>① (생략)</p> <p>②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 학위과정 이수학점의 인정범위는 3년제 학과 졸업자는 120 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p> <p>③ (생략)</p> <p>④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전문학사과정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140 학점 이상으로 한다.</p>	<p>학칙 제27조의5(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교과이수단위)</p> <p>① (현행과같음)</p> <p>②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 학위과정 이수학점의 인정범위는 3년제 학과 졸업자는 117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p> <p>③ (현행과같음)</p> <p>④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전문학사과정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137학점 이상으로 한다.</p>

<p>⑤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p>	<p>⑤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학위대학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p>
<p>학칙 제31조(성적)</p> <p>① (생략)</p> <p>②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의 강좌별 급제는 D급 이상으로 하되, 직무수행에 대한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평가해야 하는 교과목은 P급제로 한다.</p> <p>③,④ (생략)</p>	<p>학칙 제31조(성적)</p> <p>① (현행과같음)</p> <p>②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의 강좌별 급제는 D급 이상으로 하되, 직무역량에 대한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평가해야 하는 교과목은 P급제로 한다.</p> <p>③,④ (현행과같음)</p>
<p>학칙 제35조의2(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졸업 및 수료)</p> <p>① (생략)</p> <p>②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p> <p>1. 1년 과정수료 : 전문학사과정 인정학점 120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p> <p>③ (생략)</p>	<p>학칙 제35조의2(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졸업 및 수료)</p> <p>① (현행과같음)</p> <p>②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p> <p>1. 1년 과정수료 : 전문학사과정 인정학점 117학점을 포함하여 137학점 이상</p> <p>③ (현행과같음)</p>
<p>학칙 제37조(학생회조직)</p> <p>① 건전한 학생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에 학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학칙 제37조(학생회조직)</p> <p>① 건전한 학생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에 학생회를 둔다.</p>
<p>학칙 제41조(학생지도)</p> <p>① (생략)</p> <p>② 학생회를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학생지도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③,④ (생략)</p>	<p>학칙 제41조(학생지도)</p> <p>① (현행과같음)</p> <p>② 학생자치 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학생지도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③,④ (현행과같음)</p>
<p>학칙 제52조의1(교무위원회)</p> <p>① (생략)</p> <p>②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처·실장, 스쿨원장, 학과장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간 명의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p> <p>③,④ (생략)</p>	<p>학칙 제52조의1(교무위원회)</p> <p>① (현행과같음)</p> <p>② 교무위원회는 총장, 처·실장, 스쿨원장, 학과장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간 명의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p> <p>③,④ (현행과같음)</p>
<p>학칙 제54조(직제)</p> <p>① (생략)</p> <p>② 각 그룹에 부총장을 보 할 수 있으며, 처(실).팀에 처(실)장.팀장을 보 할 수 있다. 부총장.처(실)장.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p> <p>③,④,⑤ (생략)</p>	<p>학칙 제54조(직제)</p> <p>① (현행과같음)</p> <p>② 처(실).팀에 처(실)장.팀장을 보 할 수 있다. .처(실)장.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p> <p>③,④,⑤ (현행과같음)</p>
<p>학칙 제54조의1(학과 통폐합)</p> <p>학과의 통폐합은 대학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르며, 교무위원회의 심의와 대학평의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법안위원회에 보고한다.</p>	<p>학칙 제54조의1(학과 통폐합)</p> <p>학과의 통폐합은 대학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르며,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법인 이사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한다.</p>

학칙 제55조(부속기관)

① 우리 대학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

1. 보건실
2. 창업보육센터
3. HRM센터
4. 기업신속대응센터
5. 청강뮤지엄(비춤), 만화역사박물관
6.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단
7. 학교기업
8. 경기게임상용화지원센터
9. 이천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0. 경기도-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11. 교육과정혁신센터
12. 교수학습지원센터 스마트교수학습지원센터
13. 성과관리센터
14. 취업창업교육지원센터
15. 현장실습지원센터
16. 문화정보센터, 만화영상도서관
17. 평생교육원
18. 성희롱성폭력상담센터
19. 학생상담센터
20. 관리센터
21. 전자계산소
22. 예비군대대
23. 연구소(차세대콘텐츠연구소)
24. 기숙사
25. 원격교육지원센터
26. 디자인센터
27. 영상센터
28. 메이커스랩
29. 취업브리지사업단
30. 대학일자리센터
31. 문화콘텐츠아카데미
32. 기술사관어동통신현장인력육성사업단
33.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운영센터

② (생략)

학칙 부칙(개정 2022.3.1.)

(신설)

학칙 제55조(부속기관)

① 우리 대학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

1. 문화정보센터
2. 청강뮤지엄(비춤)
3. 만화영상도서관
4. 만화역사박물관
5. 미디어센터
6. HRM센터
7. 성과관리센터
8. 평생교육원
9. 문화콘텐츠아카데미
10. 메이커스랩
11. 미래교육연구센터
12. 교육과정혁신센터
13. 스마트교수학습지원센터
14. 학사학위운영센터
15. 관리센터
16. 전자계산소
17. 취업창업교육지원센터
18. 현장실습지원센터
19. 대학일자리센터
20. 취업브리지사업단
21. 학교기업 (쿨투라, CCRC)
22. 기업신속대응센터
23. 역외센터
24. 중장년기술창업센터
25. 창업보육센터
26. 학생상담센터
27. 성희롱성폭력상담센터
28. 기숙사
29. 보건실
30. 예비군대대
31. 혁신지원사업단
32. 신산업특화선도전문대학지원사업추진단

② (현행과같음)

학칙 부칙(개정 2022.3.1.)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공명 변경으로 인한 경과조치) 전공명이 변경된 재
적생의 경우 아래와 같이 소속을 변경한다.

스쿨	전공명(변경전)	전공명(변경후)	비고
만화콘텐츠스쿨	만화창작전공	웹툰만화콘텐츠전공	
푸드스쿨	조리전공	3학년 : 푸드스쿨전공 1,2학년 : 푸드전공	
	카페메이커리전공		
	푸드콘텐츠전공		
팝푸드비즈니스전공			
패션뷰티스타일스쿨	패션메이커스타일리스트전공	스타일리스트전공	
공연예술스쿨	뮤지컬전공	뮤지컬연기전공	
	연극영상전공	연극영상연기전공	
-	패션메이커스비즈니스학과	패션콘텐츠학과	

제3조 (폐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① 2022학년도 모집을 정지한 패션메이커스전공의 경우 해당 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2023학년도 1학년 복학생까지 전공을 유지한다.

학칙 별표2(학사 학위명칭)

종별	해당학과
문화콘텐츠학사	만화애니게임학과
공연예술학사	공연예술학과
패션메이커스비즈니스학사	패션메이커스비즈니스학과

학칙 별표2(학사 학위명칭)

종별	해당학과
문화콘텐츠학사	만화애니게임학과
공연예술학사	공연예술학과
패션콘텐츠학사	패션콘텐츠학과

학칙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양식변경)
[별지 제5호] (삭제)

학칙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양식변경)
[별지 제5호] (삭제)

학칙시행세칙 제1조의2(스쿨의 전공(과) 및 코스)
① 학칙 제4조 ④에 의거 스쿨 내 전공(학과) 및 세부코스는 아래와 같다.
<전문학사과정>

스쿨(과)	전공	세부전공	비고
융합콘텐츠	융합콘텐츠창작전공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전공		
만화콘텐츠	웹툰만화콘텐츠전공		
	웹소설창작전공		
게임콘텐츠	게임전공	게임그래픽, 게임프로그래밍, 게임기획, 게임운영 및 QA	
푸드	조리전공		
	카페메이커리전공		
	식품영양전공		
	푸드콘텐츠전공		
	팝푸드비즈니스전공		
패션	푸드스쿨전공		
	푸드전공		
패션	패션메이커스타일리스트전공		
	패션메이커스전공		
	스타일리스트전공		
공연예술	연출극작전공		
	뮤지컬전공		
	뮤지컬연기전공		
	연극영상전공		
	연극영상연기전공		
공연예술	무대미술전공	무대디자인제작, 음향디자인, 조명디자인	
	모바일IT	모바일통신전공	
모바일IT	스마트미디어전공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학칙시행세칙 제1조의2(스쿨의 전공(과) 및 세부전공)
① 학칙 제4조 ④에 의거 스쿨 내 전공(학과) 및 세부전공은 아래와 같다.
<전문학사과정>

스쿨(과)	전공	세부전공	비고
융합콘텐츠	융합콘텐츠창작전공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전공		
만화콘텐츠	웹툰만화콘텐츠전공		
	웹소설창작전공		
게임콘텐츠	게임전공	게임그래픽, 게임프로그래밍, 게임기획, 게임운영 및 QA	
푸드	식품영양전공		
	푸드스쿨전공		
패션뷰티스타일	푸드전공		
	패션메이커스전공		
패션뷰티스타일	스타일리스트전공		
	연출극작전공		
	뮤지컬연기전공		
공연예술	연극영상연기전공		
	무대미술전공	무대디자인제작, 조명디자인	
모바일IT	모바일통신전공		
	스마트미디어전공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학과	전공	비고
만화애니게임학과	웹툰만화콘텐츠전공	
	애니메이션전공	
공연예술학과	게임전공	
패션콘텐츠학과		

학과	전공	비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웹툰만화콘텐츠전공	
	애니메이션전공	
	게임전공	
공연예술학과		
패션메이커스비즈니스학과		

<p>학칙시행세칙 제4조(재입학)</p> <p>①,②,④ (생략)</p> <p>⑤ 재입학생은 허가된 학기의 이전학기까지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다만, 조기재입학 한 학생이 기 취득한 성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성적취소원(별지 1)을 제출하여 해당 학기 성적일체를 취소하고 당해학기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납부한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조기재입학이라 함은 자퇴 및 제적된 학기가 아닌 직전 학기에 재입학하는 것을 말한다.</p> <p>⑥ (생략)</p>	<p>학칙시행세칙 제4조(재입학)</p> <p>①,②,④ (현행과같음)</p> <p>⑤ 재입학생은 허가된 학기의 이전학기까지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다만, 조기재입학 한 학생이 기 취득한 성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성적취소를 신청하여 해당 학기 성적일체를 취소하고 당해학기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납부한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기재입학이라 함은 자퇴 및 제적된 학기가 아닌 직전 학기에 재입학하는 것을 말한다.</p> <p>⑥ (현행과같음)</p>
<p>학칙시행세칙 제7조(수강신청)</p> <p>①,②,③ (생략)</p> <p>④ 위 ③항에도 불구하고 ‘마출석 취업자 학점부여 세부운영지침’에 의해 개설된 교과목에 대해서는 스쿨 행정실 또는 관련 부서에서 수강신청 할 수 있다.</p> <p>⑤ (생략)</p>	<p>학칙시행세칙 제7조(수강신청)</p> <p>①,②,③ (현행과같음)</p> <p>④ 삭제</p> <p>⑤ (현행과같음)</p>
<p>학칙시행세칙 제7조의2(안접선택 수강신청)</p> <p>① 소속이 다른 스쿨 또는 학과의 교과목을 수강신청할 경우에는 안접선택수강신청서(별지 2)를 학생의 소속 스쿨과 수업을 희망하는 교과목을 운영하는 스쿨의 원장 승인을 받아 한 학기당 학점에 관계없이 3과목까지 수강 신청할 수 있다. 단, 부득이 그 이상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안접 선택 수강신청의 허가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담당교수가 결정한다.</p> <p>③ 안접 선택 수강신청으로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은 이수구분을 일반선택으로 표시하며, 스쿨성적사정회의 심의에 의해 전공 또는 교양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④ 융합콘텐츠스쿨은 부전공 인정 교육과정 내 교과목의 학점취득시 전공선택과목으로 인정하고 타스쿨학생들의 융합콘텐츠스쿨 교과목 학점취득시 전공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p>	<p>학칙시행세칙 제7조의2(자율선택 수강신청)</p> <p>① 소속이 다른 스쿨 또는 학과의 교과목을 수강신청할 경우에는 자율선택수강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소속 스쿨과 수업을 희망하는 교과목을 운영하는 스쿨의 원장 승인을 받아 한 학기당 학점에 관계없이 3과목까지 수강 신청할 수 있다. 단, 부득이 그 이상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자율선택 수강신청의 허가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담당교수가 결정한다.</p> <p>③ 자율선택 수강신청으로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은 이수구분을 일반선택으로 표시하며, 스쿨성적사정회의 심의에 의해 전공 또는 교양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④ 융합콘텐츠스쿨은 융합전공제 인정 교육과정 내 교과목의 학점취득시 전공선택과목으로 인정하고 타스쿨학생들의 융합콘텐츠스쿨 교과목 학점취득시 전공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p>
<p>학칙시행세칙 제12조(수강지도 및 처리)</p> <p>지도교수는 학생의 수강신청을 지도하여야 하며, 수강신청내역서를 확인 한 후 스쿨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학칙시행세칙 제12조(수강지도 및 처리)</p> <p>지도교수는 학생의 수강신청을 지도하여야 하며, 수강신청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p>
<p>학칙시행세칙 제13조의2(대체과목)</p> <p>당해 학기 이전의 재수강 과목이 폐강 또는 변경된 때에는 매 학년도 교육과정개발보고서에 대체과목을 정하여 소정의 심의를 받아 확정해야 한다. 다만, 2011학년도 이전에</p>	<p>학칙시행세칙 제13조의2(대체과목)</p> <p>당해 학기 이전의 재수강 과목이 폐강 또는 변경된 때에는 매 학년도 교육과정편성보고서에 대체과목을 정하여 소정의 심의를 받아 확정해야 한다. 다만, 2011학년도 이전에</p>

<p>입학한 학생 중 재수강과목이 폐강 또는 변경된 경우 재수강 대상 과목의 동일 학년, 학기의 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할 수 있다.</p>	<p>입학한 학생 중 재수강과목이 폐강 또는 변경된 경우 재수강 대상 과목의 동일 학년, 학기의 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할 수 있다.</p>
<p>학칙시행세칙 제13조의3(교수요목) 매 학년도 교육과정 개발보고서에 개설 교과목의 교수요목을 작성하여 소정의 심의를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p>	<p>학칙시행세칙 제13조의3(교수요목) 매 학년도 교육과정 편성보고서에 개설 교과목의 교수요목을 작성하여 소정의 심의를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p>
<p>학칙시행세칙 제14조의2(평가계획서) ① 교수요목 및 강의계획서에 근거하여 평가계획서를 작성하고, 평가계획서에 의거한 시기와 수행준거에 따라 학생의 직무수행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한다. ② 평가계획에는 20점 이상의 출석점수와 2회 이상의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를 반드시 포함한다. 직무수행능력평가의 시행시기와 횟수는 교수자가 강의계획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p>	<p>학칙시행세칙 제14조의2(평가계획서) ① 교수요목에 근거하여 평가계획서를 작성하고, 평가계획서에 의거한 시기와 수행준거에 따라 학생의 직무역량을 공정하게 평가한다. ② 평가계획에는 20점 이상의 출석점수와 2회 이상의 직무역량평가 점수를 반드시 포함한다. 직무역량평가의 시행시기와 횟수는 교수자가 강의계획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p>
<p>학칙시행세칙 제16조(휴학) 휴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입대휴학, 일반휴학으로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입대 휴학생은 휴학원에 군입영 통지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또한 의무 군 복무기간 종료 후 복무기간 연장에 따른 군휴학은 1년 단위로 군복무증명서를 제출하고 스쿨 행정실에 휴학 의사를 통보하여 휴학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2. 3. 4. 5. 6. 8 (생략) 9.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10. (신설) 	<p>학칙시행세칙 제16조(휴학) 휴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입대휴학, 일반휴학으로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입대 휴학생은 휴학원에 군입영 통지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또한 의무 군 복무기간 종료 후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고자 할 때에는 1년단위의 일반휴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3. 4. 5. 6. 8 (현행과같음) 9.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휴학할 수 있다. 10. 졸업유예자는 휴학을 불허한다.
<p>학칙시행세칙 제19조(복학) ① 휴학한 학생은 그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매 복학 학기 개시 후 3주(21일) 이내에 복학원을 스쿨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복학하지 않는 자는 제적처리한다. ③ (생략) ④ 조기복학 한 학생은 성적취소원(별지 1)을 제출하여 해당 학기 성적 일체를 취소하고 당해 학기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납부한 후 수강 신청할 수 있다. 조기복학이라 함은 복학예정 학기가 아닌 직전 학기에 복학하는 것을 말한다. ⑥ (생략)</p>	<p>학칙시행세칙 제19조(복학) ① 휴학한 학생은 그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매 복학 학기 개시 후 3주(21일) 이내에 복학을 신청하여야 하며 복학하지 않는 자는 제적처리한다. ③ (현행과같음) ④ 조기복학 한 학생은 성적취소를 신청하여 해당 학기 성적 일체를 취소하고 당해 학기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납부한 후 수강 신청할 수 있다. 조기복학이라 함은 복학예정 학기가 아닌 직전 학기에 복학하는 것을 말한다. ⑥ (현행과같음)</p>
<p>학칙시행세칙 제26조(학생평가) ① 학생이 교과목에서 달성해야하는 교육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는 평가계획서에 의거하여 매학기 2회 이상 직무수행능력평가 로 실시한다.</p>	<p>학칙시행세칙 제26조(학생평가) ① 학생이 교과목에서 달성해야하는 교육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는 평가계획에 의거하여 매학기 2회 이상 직무역량평가로 실시한다.</p>

<p>②,③,④ (생략)</p> <p>학칙시행세칙 제27조(성적평가)</p> <p>① 각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평점평균으로 하되 출석과, 평가계획서에 따른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산출한다.</p> <p>③ (생략)</p> <p>④ 등록학기 수업일수 3/4이후 균휴학한 휴학생의 해당학기 성적은 중간고사(직무수행능력평가 1)만으로 기말고사(직무수행능력평가 2)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p>	<p>②,③,④ (현행과같음)</p> <p>학칙시행세칙 제27조(성적평가)</p> <p>① 각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평점평균으로 하되 출석과,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산출한다.</p> <p>③ (현행과같음)</p> <p>④ 등록학기 수업일수 3/4이후 균휴학한 휴학생의 해당학기 성적은 중간고사(직무역량평가 1)만으로 기말고사(직무역량평가 2)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p>
--	---

<p>학칙시행세칙 제32조(추가시험 및 시험결시자 성적처리)</p> <p>① 징병검사, 질병(전문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첨부), 상고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평가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해당 교과목 시험일시 이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시험불참원(별지 3)을 스쿨원장에게 제출하여 1회에 한하여 추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p> <p>② 시험기간 중 제25조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불참원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스쿨원장에게 제출하고, 스쿨원장은 각 과목 담당교수에게 통지하며, 각 과목 담당교수는 반영 비율에 의거, 성적을 처리할 수 있다.</p>	<p>학칙시행세칙 제32조(추가시험 및 시험결시자 성적처리)</p> <p>① 징병검사, 질병(전문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첨부), 상고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평가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해당 교과목 시험일시 이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시험불참원(별지1)을 스쿨원장에게 제출하여 1회에 한하여 추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p> <p>② 시험기간 중 제25조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불참원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스쿨원장에게 제출하고, 스쿨원장은 각 과목 담당교수에게 통지하며, 각 과목 담당교수는 반영 비율에 의거, 성적을 처리할 수 있다.</p>
--	---

결시구분	사유	반영 비율	성적 반영 방법
·국가에서 부과하는 의무수행으로 인한 결시 ·국가적 재난 및 비상재해로 인한 결시 ·총장이 승인한 학교 공무결시	· 징병검사 · 국가전염병 등의 치료 · 정부기간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100%	1. 중간고사(직무수행능력평가 1) 결시자 : 기말고사(직무수행능력평가 2) 성적을 반영비율에 의거 성적산출
·경조사에 의한 결시	· 직계가족의(친가, 외가)사망	90%	2. 기말고사(직무수행능력평가 2) 결시자 : 중간고사(직무수행능력평가 1) 성적을 반영비율에 의거 성적산출
·총장이 부득이 하고 인정한 결시	· 기타 학교에서 허가한 사유 · 질병 및사고에 의한 입원	80%	성적을 반영비율에 의거 성적산출

결시구분	사유	반영 비율	성적 반영 방법
·국가에서 부과하는 의무수행으로 인한 결시 ·국가적 재난 및 비상재해로 인한 결시 ·총장이 승인한 학교 공무결시	· 징병검사 · 국가전염병 등의 치료 · 정부기간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100%	1. 중간고사(직무역량평가1) 결시자 : 기말고사(직무역량평가 2) 성적을 반영비율에 의거 성적산출
·경조사에 의한 결시	· 직계가족의(친가, 외가)사망	90%	2. 기말고사(직무역량평가2) 결시자 : 중간고사(직무역량평가 1) 성적을 반영비율에 의거 성적산출
·총장이 부득이 하고 인정한 결시	· 기타 학교에서 허가한 사유 · 질병 및사고에 의한 입원	80%	성적을 반영비율에 의거 성적산출

학칙시행세칙 제35조(유급)

②,③ (생략)

④ 유급된 학생은 차년도 등록시 학년이 변동되지 않으며, 학년에 따른 **직무수행능력** 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강신청을 지도하도록 한다.

학칙시행세칙 제35조(유급)

②,③ (현행과같음)

④ 유급된 학생은 차년도 등록시 학년이 변동되지 않으며, 학년에 따른 **직무역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강신청을 지도하도록 한다.

학칙시행세칙 제37조(졸업및수료)

① (생략)

③ 졸업학점이 충족된 학생이 졸업 유예를 희망할 경우 졸업사정회 전까지 졸업유예 신청서(별지 4)를 스쿨행정실에 제출하면 최대 1년간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 학위수여 유예학생은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각 종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학칙시행세칙 제37조(졸업및수료)

① (현행과같음)

③ 졸업학점이 충족된 학생이 졸업 유예를 희망할 경우 졸업사정회 전까지 졸업유예 신청서(별지2)를 스쿨행정실에 제출하면 최대 1년간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 학위수여 유예학생은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각 종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학칙시행세칙 제38조(수업연한초과졸업)

① 졸업대상자 중 수업연한 내 **미취득 학점이 22학점 이하인**

학칙시행세칙 제38조(수업연한초과졸업)

① 졸업대상자 중 수업연한 내 졸업에 충족되는 학점을 **미취**

<p>학생으로 졸업에 충족되는 학점을 취득 가능할 경우 수업연한 초과 졸업에 해당한다.</p> <p>②,③,④ (생략)</p>	<p>득 할 경우 수업연한 초과 졸업에 해당한다.</p> <p>②,③,④ (현행과같음)</p>
<p>학칙시행세칙 제42조(증명서의 종류)</p> <p>본 대학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2.3.4.5.6.(생략)</p> <p>7. 졸업예정증명서: 졸업 마지막 학기에 등록금을 낸 자 중, 기 취득학점과 졸업예정 학기 수강신청 학점의 총합이 졸업 이수 학점 기준에 충족한 학생.</p> <p>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경우, 1학기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성적사정결과 취득학점이 130 학점(전문학사과정 취득학점 포함)인 학생.</p>	<p>학칙시행세칙 제42조(증명서의 종류)</p> <p>본 대학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2.3.4.5.6.(현행과같음)</p> <p>7. 졸업예정증명서: 졸업 마지막 학기에 등록금을 낸 자 중, 기 취득학점과 졸업예정 학기 수강신청 학점의 총합이 졸업 이수 학점 기준에 충족한 학생.</p> <p>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경우, 1학기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성적사정결과 취득학점이 127 학점(전문학사과정 취득학점 포함)인 학생.</p>
<p>학칙시행세칙 부칙 (개정2022.3.1.)</p> <p>(신설)</p>	<p>학칙시행세칙 부칙 (개정2022.3.1.)</p> <p>(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별표] 1 스쿨별 규정 주요 내용(전체스쿨)</p> <p>4. 교양 이수학점 기준은 2019학년도 입학자 및 1학년-복학자부터 소급 적용한다.</p>	<p>[별표] 1 각스쿨별 규정 주요 내용(전체스쿨)</p> <p>4. (삭제)</p>
<p>[별표] 1 스쿨별 규정 주요 내용(패션스쿨)</p> <p>스쿨명 : 패션스쿨-</p> <p>3.신설</p>	<p>[별표] 1 스쿨별 규정 주요 내용(패션스쿨)</p> <p>스쿨명 : 패션뷰티스타일스쿨</p> <p>3. 모집이 정지된 패션메이커스전공의 경우 학칙의 부칙 제3조를 따른다</p>
<p>[별표] 1 스쿨별 규정 주요 내용(유아교육과)</p> <p>2. 전과 관련 사항 (신설 2019.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 내의 디 스쿨에서 본과로의 전과를 허용한다. - 전과한 학생은 2급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전과하기 이전에 본교에서 취득한 과목의 학점 인정여부는 유아교육과 교육과정 개발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p>[별표] 1 스쿨별 규정 주요 내용(유아교육과)</p> <p>2. 유아교육과의 모집정지로 인해 전과를 허용하지 않는다.</p>
<p>[별지1] , [별지2] 삭제</p>	<p>[별지3]→[별지1]</p> <p>[별지4]→[별지2]</p> <p>[별지5]→[별지3]</p>